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제 188 호

제출년월일 : 1997.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개정사유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244호, 96. 12. 31)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복무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 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함.(안 제12조 제1항 단서·제2항 및 제15조의 2)
-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함.(안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함.  
(안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 제1항)
-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안 제19조 제3항)
-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제8호 및 제22조 제8항)

□ 개정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증개정령(대통령령 제15,244호, 1996. 12. 31)

□ 조례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토요전일근무제) ①교육감은 국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을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제22조제6항중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를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로, "장기근속 휴가를"을 "장기재직휴가를"로, "근속기간의"를 "재직기간의"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 단서중 "1월이상"을 "30일이상"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